

명백한 오보, 손해배상으로 직권 결정해

박은영
조사팀
(서울제8중재부 조사관)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에 배당된 사건들은 대부분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날씨보도 등에 사용된 단순 초상권 침해 사건부터 동의 없이 공개된 음성권 침해 사건 등 명약관화하게 언론사의 과실로 발생한 보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올해 7월 이후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 외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도 배당받아 처리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 또는 기사 삭제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면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 시사주간지는 어느 기업체에서 작성한 명절 선물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물 리스트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기업체 대표인 신청인은 보도된 리스트 중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리스트는 기업 대표가 관례적으로 명절 때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가 시작되고 피신청인측은 신청인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정정보도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마치 대가를 바라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양당사자 간 입장차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절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중재부가 명백한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한 일간지가 경찰 간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제때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도한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 간부인 신청인은 부적절한 외상은 없었으며 보도가 나기 전 다른 기자들에게 해당 영수증을 확인시켰고, 식당 주인에 대해 안내 경찰이 조사 중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가 시작되었지만 피신청인측은 반론보도 외에는 정정보다나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취재기자에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크고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해당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하면서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은 조정의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분쟁을 마무리 하려는 신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론사들도 취재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